

아주대학교 기계설비용 자동제어설비 보수공사 / 과업지시서



2024. 11.

아주대학교

1. 일반사항

1. 공사명 : 아주대학교 기계설비용 자동제어설비 보수공사

2. 공사개요

가. 공사위치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

나. 공사내용

- 1) 원천관 건물 중앙감시반 자동제어 PC 교체 및 소프트웨어 설치
 - 기존 S/W : COMPASS, Alerton
 - 변경 S/W: Honeywell, Niagara Web`s N4
 - 2) 프로토콜게이트웨이(Alerton, WEB-8100-U, 8025-U) 교체 설치
 - 3) 마스터 카드(Alerton, BCM) 교체 설치
 - 4) 자동제어 통신망 변경 작업 (통신선 포설)
 - 5) 자동제어 S/W 교체에 따른 기존 인터페이스 재설정 및 종합 시운전
- ※ 상세 과업내용은 ‘하단의 II.특기사항’ 내용 참조

3. 공사기간 :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

4. 입찰개요

가. 입찰방법 : 제한경쟁입찰

※ 현장설명회 미실시

나. 낙찰자 결정 : 총액 최저가 입찰

다. 입찰참가자격

- 1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
- 2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
- 3) 입찰 공고일 기준 「건설산업기본법령」에 의한 「기계설비·가스공사업」 면허를 보유한 업체
- 4)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,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(서울, 경기도, 인천) 소재업체
- 5) 2024년도 기계설비·가스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(대한기계설비협회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제출)
- 6)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에 대학(교) 또는 관공서에서 발주한 자동제어설비공사 관련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(실적증명서 제출)

※ 실적기준 : 단일 건으로 1억원 이상

7) 제조사의 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(협약서 제출)

5. 공사 일반사항

가. 제작 및 설치 승인

- 1)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규격서에 의거 설계, 제작,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, 제작, 설치하여야 한다.
- 2)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,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,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발주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.

나. 사용자재 및 기기

- 1)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현장에 반입 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후,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자의 확인 입회하에 시공한다. 이때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.
- 2) 모든 자재는 제조사에서 공식인증한 정품 또는 KS 제품을 우선으로 사용하고, 시공 전 반드시 자재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.

다. 시공 유의사항

- 1) 모든 공사는 '제조사의 설치기준' 또는 국토교통부제정 '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' 기준에 따른다.
- 2)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, 공정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완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한다.
- 3) 코아 작업 및 설치에 관련된 일체 행위에 따른 전기, 통신, 방송, 인터넷 전선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발견 시 발주처 담당에게 연락을 취한다.
- 4) 설치 검수시, 설치된 물품의 결함이 있을 경우, 계약자는 즉시 무상으로 재설치하여야 한다.
- 5) 기존 설치된 시설물의 임의적 변경 또는 파손을 절대로 금한다.

라. 시공관리

- 1) 모든 제품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, 설계도서 에 명시되지 않은 변경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.
- 2) 모든 공사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세부작업 일정 및 소음, 먼지발생 방지를 위한 작업방법을 강구하고,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.
- 3) 현장관리는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하고 해당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4)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, 현장 공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.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에 시공한다.

- 5) 감독원이 지시하는 안전, 환경, 위생, 화재예방, 정리정돈, 공해방지 등의 현장관리상 보완해야 할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.
- 6) 작업완료 후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각종 쓰레기를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 처리한다.
- 7) 공사기간에 나오는 폐자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6. 안전 관리사항

가. 근로자 안전

- 1) 교내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
 - 전 근로자 안전모 안전화 각반 마스크 착용 필수
 - 지정된 구역에서만 흡연가능

나. 현장 안전

- 1)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사고 화재 도난 부상 사망 기타 재해사고 등 는 시공자가 책임처리한다.
- 2) 시공자는 공사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 피해, 차량 및 통행인의 이동 방해,분진 발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.
- 3) 시공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. 반드시 현장 주변으로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공사구역에 대한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.
- 4) 공사 시행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차량 및 인원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다.
- 5)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재 정돈 상태를 점검 및 정돈하고, 현장내부는 항상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한다.
- 6)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의 현장 청소 및 이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.

II. 특기사항

1. 주요 과업내용

번호	구분	내역	단위	수량	설치장소
1	운영PC 및 소프트웨어 구축	중앙감시장치 운영PC교체 (Window, MS Office, 백신 포함) 및 자동제어 S/W 설치 (Honeywell WEBs N4) ※ 기존S/W : Alerton COMPASS	식	1	원천관
2	DDC 카드 교체	Alerton VLC-16160	EA	1	원천관
		Alerton VLC-1188	EA	1	
		Alerton VLC-550	EA	1	
3	프로토콜 게이트웨이 교체	Honeywell WEB-8100-U	EA	1	원천관
		Honeywell WEB-8025-U	EA	4	팔달관, 산학협력원, 약학관, 울곡관,
4	마스터 카드 교체	Alerton BCM 기존 모델 교체, 마스터 복구작업	식	1	체육관
5	네트워크 연결공사	시설팀 네트워크망(폐쇄망) 전환작업 (UTP CAT.5E 4P 케이블 포설) ※ IP주소는 발주처에서 지급예정	식	1	팔달관, 산학협력원, 약학관, 울곡관
6	시운전 조정	인터페이스 설정 및 시운전 작업	식	1	교내 전체건물 (17개동)

※ S/W 교체설치 완료 이후, 기존에 연동되어있던 ‘모든 건물’의 설비자동제어 연동에 이상이 없도록 구성해야함.

2. 자동제어설비 운영PC 사양

품 명	세 부 규 격
CPU	- Intel Core i7-8700 Processor, 3.2GHz 이상
Memory	- 32GB DDR4 2400MHz 이상
HDD	- 500GB SSD + 500GB SATA3 이상
VGA	- Intel HD630 Graphics 이상
운영체제(O/S)	- Windows 10 or 11, 64bit 이상

3. 자동제어 시스템 사양

품 명	세 부 항 목
자동제어 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DDC와 및 데이터와 호환 - Windows 10 or 11 - 그래픽 환경에서 감시 및 제어 - 다중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Multi-Tasking 환경을 지원 - Historical Data의 취합 및 분석 - WEBS N4 VER.10 이상 - 제조사 : 하니웰㈜

※ 모든 품목 사양은 하기 제원 또는 동등품 이상이어야 한다.

4. 설치 조건

- 가. 설비자동제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감독관와 협의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나. 신규도입 프로그램과 기존에 사용하던 설비자동제어 연동에 이상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- 다. 기기 설치
 - 1) 모든 기기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작 또는 구입된 제품이어야 한다.
 - 2) 모든 기기는 취급이 용이하고 편리해야 하며, 내구성이 강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
 - 3) 기기설치는 감독관 입회 또는 협의 후 설치한다.
 - 4) 모든 물품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규격에 의해 제작 설치한다.
 - 5) 모든 물품은 설치 후 설비자동제어 테스트를 실시한다.

5. 배선 설치

- 가. 통신선 배선 공사 시 타배선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 시킨다.

- 나. CABLE 설치 중 절연 피복의 손상이나 조임, 굴곡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설치되어야 하며, 설치 중 손상된 CABLE, 피복이 찢어진 CABLE은 사용할 수 없다.
- 다.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CABLE은 감독관이 요구시 적합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라. KS규격 및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, 시스템 설치와 관련된 일반의 모든 설치를 포함한다.

6. 구매 조건

- 가. 계약상대자는 납품, 설치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H/W 구성, 통신망(LAN) 연결, 발주처의 목적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, 제품의 안정성,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시스템을 일괄 납품, 설치해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, 부품 등을 포함한 장비는 규격서를 100% 만족시키는 정품,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하며, 반드시 제조회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다. 납품되어지는 운영체제 및 모든 소프트웨어는 원천개발사 정품이어야 한다.
- 라. 설치시 사용되는 모든 부자재는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.

7. 시스템 공급 및 설치

- 가.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을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설치하여야 하며, 시스템의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때 발주처의 전산실에 기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.
- 다. 시스템 설치 시 전산실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,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빠른 시일 내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.
- 라. 기존 전산장비(LAN, 통신장비 등)의 접속 및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.
- 마. 계약상대자는 장비설치에 있어서 전원 설비 등 제반 여건 마련에 모든 필요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8.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

- 가. 물품 규격의 확인은 본 요구서 및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,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은 발주처의 감독관과 계약상대자의 소속 검사원이 입회하여, 납품제품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.
- 나. 현장시험에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, 계약상대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.

9. 교육 및 운영지원

- 가.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미한 장애조치를 위하여 발주처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상운동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- 나. 시스템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 하에 지원하여야 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검수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 - 1) 납품 시스템(H/W 및 S/W)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
 - 2)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

10. 하자 및 기술지원 사항

- 가. 납품된 시스템에 대한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.
- 나. 향후 발주처가 추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, 타 기종으로의 교체, 통합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지원, 협조하여야 한다.

11. 기타 사항

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,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하며, 사전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담당자와 일정조율 후 조치한다.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Ⅲ. 기타사항

1. 견적조건

- 가.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현장실측을 실시하고, 물량과 단가를 표시한 내역서를 제출한다.
 - 물량산출 및 단가산정 잘못은 인정치 않으며, 이에 대한 설계변경은 없음
 -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되, 반드시 현장실측 및 현장여건을 확인 후 견적해야 함. 실측오류 및 현장 공사 여건 확인 미비에 따른 설계변경 없음. (지급된 자료는 견적목적용으로만 사용하며, 입찰완료 후에는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파기 조치 한다.)
 - 본 공사를 위한 과업지시서는 상 표현이 모호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질의응답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여 명확한 공사 내용을 제시받아야 한다. 이의 제기없이 공사 중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 사양 및 방법으로 공사비 증가 없이 시공되어야 한다.
 -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.
- 나. 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환경보전비,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내역에 포함하며, 공사 후 정산한다.

- 정산과정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미지급
- 공사 및 정산완료에 따라 공사비 지급이 완료된 후라도, 학교 감사과정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금액으로 판정될 경우, 환수해야 함
-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, 2019년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(증액)계약이 가능함. 단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, 집행 전에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.

- 간접비 정산은 본교 현장명으로 별도 가입된 내용만 인정

다. 공사 시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학교에서 규정한 주차료 납부 포함
(주차료: 1,000원/2시간, 2,000원/4시간, 3,000원/당일, 30,000원/월)

라. 공사기간 중 현장소장 1명 반드시 상주 할 것

2. 지급자재

가. 가설전기 및 가설용수 (가설전기 및 가설용수 시설비는 업체 부담)

나. 상기 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자재를 포함하여 견적

다. 기타 작업발판 등 모든 가설자재는 지급치 않으며 설치 및 해체, 정리는 일체 시공자 부담임.

3. 질의응답

가. 입찰 관련 : 구매관재팀 이나경(031-219-2067)

나. 공사 관련 (과업지시서 내용 관련 질의응답)

- 질의 : 입찰공고일로부터 3일차 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/ hcm3843@ajou.ac.kr
- 응답 : 전자입찰 2일전 18:00 까지 일괄 이메일로 공지
-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, 시설팀 허철민(031-219-2081)으로 연락

※ 첨부자료

1. 간접비 정산 확인서

확 인 서

- 업체명 :
- 이 름 :
- 부서 및 직책 :
- 사무실 연락처 :
- 핸드폰 번호 :

“아주대학교 기계설비용 자동제어설비 보수공사”_진행완료 후 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환경보전비는 사후정산하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.

명기된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“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”, 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”, “발주처 내부기준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.

기존 내역서에 명기된 금액 미만으로 집행될 경우 미지급하며,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하지 않는다.

예외로 안전관리비 집행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, 2019년 개정된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(증액)계약이 가능하다. 단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, 집행 전에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.

1. 고용보험 산재보험

- 증빙서류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공사명 기재

2. 산업안전보건관리비

- 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적용기준

- 증빙서류

- 1) 인건비성 :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 노임대장 업무일지 날짜별 업무내용/시간), 날짜별 사진
- 2) 안전·보건관리자 : 안전·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며,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한 경우만 인정
- 3) 물품구매 : 세금계산서 사본, 무통장입금증 사본, 영수증 사본, 반입사진. 설치 사진, 설치위치 등
 -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: 현장배경 물품 반입 사진 근로자 실착용 사진 (지급 물량 = 근로자 사진), 지급대장(대상자 서명포함) 등

- 안전시설비: 설치 위치 표기 도면, 수량산출, 반입사진, 설치사진 등

○ 인정불가

- **[첨부자료.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에 해당하는 모든 내역**
- 안전시설 및 인건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면 절대 인정불가
- 신호수 : 유도·신호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, 현장 외부에서 차량통제를 위한 신호수
- 안전시설 : 현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웬스 및 분진망 등

3. 환경보전비

- 적용기준 : 국토교통부고시 "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적용기준"

○ 증빙서류

- 인건비성 : 지급명세서 사본, 신분증 사본, 노임대장, 업무일지(날짜별 업무내용/시간), 날짜별 사진
- 물품구매 : 세금계산서 사본, 무통장입금증 사본, 영수증 사본

○ 인정불가

- 현장청소 인건비,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
- 단순 청소용품 : 마대, 마스크/장갑, 청소도구(빗자루, 쓰레받이, 집게, 삽 등)
- EGI 펜스(추락방지용)
- 부직포(일반용)
- 환경관리 전담인력 인건비
- 폐기물 처리비(별도내역으로 지급)

2024. . .

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

항 목	사 용 불 가 내 역
<p>1.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(제7조제1항제1호 관련)</p>	<p>가. 안전·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</p> <p>1) 안전·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(영 별표3 제46호에 따라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)</p> <p>2)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3) 영 제17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※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·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(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·신고한 경우,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·신고한 경우,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·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)</p> <p>나.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</p> <p>1) 시공, 민원, 교통,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가)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나)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<u>유도·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다)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,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※ 도로 확·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, 공사현장 진·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</p> <p>다. 안전·보건보조원의 인건비</p> <p>1) 전담 안전·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</p> <p>2) 보조원이 안전·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</p> <p>3) 경비원, 청소원,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·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(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인건비</p>
<p>2. 안전시설비 등</p>	<p>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, 장치, 자재, 안내·주의·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·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·</p>

항 목	사 용 불 가 내 역
(제7조제1항제2호 관련)	<p>수리 및 설치·해체 비용 등</p> <p>가.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, 장치, 도구, 자재 등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외부인 출입금지,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) 각종 비계, 작업발판, 가설계단·통로, 사다리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안전발판, 안전통로,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- 다만, 비계·통로·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, 사다리 전도방지장치,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·사다리,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)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) 작업장 간 상호 연락,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·설비 5)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, 공사 진척상황 확인,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함 <p>나. 소음·환경관련 민원예방,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, 표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, 분진망 등 먼지·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) 도로 확·포장공사, 관로공사,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, 안내·주의·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공사안내·경고 표지판, 차량유도등·점멸등, 라바콘, 현장경계휀스, PE 드럼 등 <p>다. 기계·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등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,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)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</p> <p>라.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(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)</p>
3. 개인보호구	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, 복리·후

항 목	사 용 불 가 내 역
<p>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(제7조제1항제3 호 관련)</p>	<p>생적 근무여건 개선·향상, 사기 진작,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·수리·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가. 안전·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·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, 카메라, 컴퓨터,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</p> <p>나.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, 장구, 용품 등</p> <p>1) 작업복, 방한복, 방한장갑, 면장갑, 코팅장갑 등</p> <p>※ 다만,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, 쿨토시, 아이스조끼, 핫팩,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</p> <p>2)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</p>
<p>4.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(제7조제1항제4 호 관련)</p>	<p>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,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가. 「건설기술진흥법」, 「건설기계관리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, 안전점검 및 검사,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·정기·구조변경·수시·확인검사 등</p> <p>나.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</p> <p>다. 「환경법」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</p> <p>라.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</p> <p>마. 매설물 탐지, 계측, 지하수 개발, 지질조사,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</p> <p>바.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</p> <p>사. 안전순찰차량(자전거, 오토바이를 포함한다) 구입·임차 비용</p> <p>※ 안전·보건관리자를 선임·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, 수리비,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</p>
<p>5.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(제7조제1항제5 호 관련)</p>	<p>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,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가.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·해체·운영비용</p> <p>※ 다만, 교육장소 부족,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</p> <p>나.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</p> <p>다.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, 회사기, 전화기,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</p>

항 목	사 용 불 가 내 역
	<p>라.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(품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)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)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)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,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<p>마.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신문 구독 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다만,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, 기술적 정보를 60%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2)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)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<p>바.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, 안전기원제 행사비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2)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(기도비용 등을 말한다) 3)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4)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<p>사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</p>
<p>6.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(제7조제1항제6호 관련)</p>	<p>근무여건 개선, 복리·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가.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·기구·약품 등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간식·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, 탈의실, 이동식 화장실, 세면·샤워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분진·유해물질사용·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, 세면·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2)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, 정수기·제빙기, 자외선차단용품(로션, 토시 등을 말한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,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비, 6~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

항 목	사 용 불 가 내 역
	3) 흡서·흡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·보약 구입 비용 ※ 작업 중 흡한·흡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·해체·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)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) 병·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, 암 검사비, 국민건강보험 제 공비용 등 ※ 다만, 해열제,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 나. 파상풍,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(신종플루 예방 접종 비용을 포함한다) 다.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·해체·유지 비, 기숙사 방역 및 소독·방충비용 라.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
7. 건설재해예 방기술지도 비	-
8. 본사 사용 비 (제7조제1항제6 호 관련)	가.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 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.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